17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(訂正)

建設交通部 公告 第1996－33號 1996. 2. 14

관보 제13236호('96. 2. 10)에 게재된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－33호(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)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관 련 조 문	오 류 사 항	정 정 사 항
2. 주요골자 가. 2번째 ○표	2주이상 교육훈련 해당하는 자에 초급기술자가 누락되었음.	ㅇ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미만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, 기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미만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, 고급기술자, 중급기술자, 초급기술자 : 2주이상

가격경쟁 부실공사 기술경쟁 성실공사